

<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맹계약을 체결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본 서류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 받아 보고, 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080100444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08.09.0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02.05

www.curveskorea.co.kr
franchise@curveskorea.co.kr

커브스

정 보 공 개 서

(주)커브스코리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25. 01. 07.

(주)커브스코리아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즈니스파크 A동(210~212호)
대표전화 : 02)3463-4242
팩 스 : 02)3463-4248
사업본부 : 02)3463-4242(ARS1)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5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0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1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19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31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33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37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신설)	39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The power to amaze yourself.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주)커브스 코리아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06.05.29	2006.07.02.	김운용, 김재영	02-3463-4242	02-3463-4248
	법인등록번호	110111-3466904	사업자등록번호	214-87-91095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특수관계인 중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 경영 경험이 있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김재영 (주)커브스코리아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본인	02-3463-4242	02-3463-42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	김운용 (주)커브스코리아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본인	02-3463-4242	02-3463-4248
임원	김정아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3463-4242	02-3463-42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김상훈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3463-4242	02-3463-4248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임원	변종원	커브스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11길 25, H비지니스파크 A동 210~212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02-3463-4242	02-3463-4248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인수·합병 여부	기업명	영업표지	인수·합병일	주 소	대표자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을 인수함	해당없음				
가맹본부가 다른 기업의 가맹사업 일부를 인수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에 가맹사업 일부를 인도함	해당없음				
다른 기업이 가맹본부를 합병함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커브스' 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커브스	여성전용 30분 순환운동의 등록 상표입니다.
상 호	커브스 OO클럽	해당 클럽 입지 행정동명 기재
상표(서비스표)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0014424호
광 고	커브스 운영 매뉴얼	당사 업무지침
그 밖의 영업표지	커브스 운영 매뉴얼	당사 업무지침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3,460,573	1,114,900	2,345,673	3,156,172	△454,421	△419,234
2022년	3,322,746	1,197,716	2,125,030	3,026,911	△236,137	△220,643
2023년	3,259,483	1,163,935	2,095,548	2,835,992	△9,284	△29,481

그 근거자료는 별첨 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와 같습니다.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 1)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김재영	대표이사	2005.03~2006.05	(주)아트피트니스컨설팅	대표이사
			2006.06~현재.	(주)커브스코리아	대표이사
	김운용	대표이사	2010.03~2021.12	(주)커브스코리아	부사장
			2024.05~현재	(주)커브스코리아	대표이사
가맹사업 비관련 임원	김상훈	이사	1995 ~ 현재	김 한의원	원장
	김정아	이사	2024.05 ~ 현재	현대중공업	해외사업개발
	변종원	감사	2022.12~현재	현대중공업	해외사업개발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1	1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해당없음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curves	제41류 등 3개류, 운동시설 제공업등 472건	2004.5.11 출원 2005.11.25등록	출원 제4520040001697 등록 제4500144240000	커브스 인터내셔널, 인코포레이티드	2025.11.25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power to amaze yourself.

II. 가맹본부의 커브스 가맹사업 현황

1. 커브스를 시작한 날: 2006년 7월 30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1년 8월 3일)

2. 커브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커브스 코리아	커브스	김재영	2006.7.30. ~ 2010.12.18.	서울 서초구 양재동 84-4번지
			2010.12.19.~2018.08.30	서울 서초구 논현로 145, 6층
			2018.08.31.~2023.08.22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210~213호
			2023.08.23.~2024.05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210~212호
		김운용, 김재영	2024.05~현재	서울 송파구 법원로11길 25, A동 210~212호

3. 커브스 업종

영업표지	업종	
(주)커브스코리아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스포츠관련	휘트니스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커브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32	231	1	215	214	1	200	199	1
서울	64	63	1	59	58	1	56	55	1
부산	6	6	0	5	5	0	5	5	0
대구	2	2	0	2	2	0	2	2	0
인천	8	8	0	7	7	0	4	4	0
광주	1	1	0	1	1	0	1	1	0
대전	15	15	0	14	14	0	13	13	0
울산	7	7	0	5	5	0	5	5	0
세종	3	3	0	2	2	0	2	2	0
경기	68	68	0	66	66	0	64	64	0
강원	7	7	0	6	6	0	6	6	0
충북	14	14	0	14	14	0	13	13	0
충남	6	6	0	4	4	0	4	4	0
전북	0	0	0	0	0	0	0	0	0
전남	2	2	0	3	3	0	3	3	0
경북	8	8	0	7	7	0	7	7	0
경남	16	16	0	14	14	0	12	12	0
제주	5	5	0	6	6	0	3	3	0

5. 바로 전 3년간 커브스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254	4	0	27	7	231
2022	231	7	0	24	6	214
2023	214	3	0	18	8	199

6. 커브스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커브스외에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이 없습니다.

(단위: 개)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업종	가맹점/직영점의 수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해당없음				
특수관계인 (계열회사)			해당없음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커브스 가맹점사업자 한 명이 2023년에 올린 연간 평균 매출액 및 지역별 매출액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보다 정확한 금액은 매출액 표의 상한과 하한 금액 사이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합리적인 산정을 위하여 당사는 6개월미만 영업을 한 가맹점 1곳을 제외한 198개의 가맹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위에 나와 있는 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사의 가맹점사업자 연간 매출액은 가맹점별 COS(커브스코리아 회원관리 프로그램)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한 것입니다.

단, 락카임대와 상품판매에서 발생하는 매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주)커브스코리아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커브스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커브스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99	3,697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커브스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사 및 지역총판이 없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커브스와 관련하여 광고비 및 판촉비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비 및 판촉비를 가맹점사업자와 분담하는 기준은 28쪽을 참고하십시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308,691	308,691		
광고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판촉	(비공개)	연중	(비공개)	(비공개)		
	(비공개)	연중	0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당사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여 가맹금 예치의무가 없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서울보증보험과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내용	비고
보험인(보험회사)	(주)서울보증보험	
보험계약자	(주)커브스코리아	가맹본부

피보험인(보험금을 지급받는 자)	가맹점사업자	
보험기간	가맹금 예치기간(가맹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 또는 가맹점사업자 영업 개시일까지)	
보험금액	40,700,000원	
보장범위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액 일부 보장	
지급조건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 불이행	
보험금의 수령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보험금 신청 → 가맹본부 경유 → 보험회사 접수 → 보험회사 조사 → 지급 여부 결정 → 보험금 지급	평균 1개월 소요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커브스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40,700				
프랜차이즈권 (가입비)	13,200	계약체결 이후 교육시작 이전	반환되지 않음	5년 이상의 배타적 영업권 부여	
교육비	11,000	계약체결 이후 교육시작 이전	반환되지 않음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보증금	해당사항 없음				
개점 전 서비스와 문서작성 및 공정	16,500	계약체결 이후 교육시작 이전	반환되지 않음	인력지원	

2) 당사는 가맹시 보증금을 별도로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해당없음			

※ 다만, 가맹계약 갱신 후 갱신계약기간 5년 종료 후, 즉 최초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서상에 보장된 5년간의 가맹계약 갱신기간 종료 후 추가로 연장되는 가맹계약 (이하 '추가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5,000,000원에 해당하는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간의 추가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없을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기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잔존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존 채무를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에서 차감 정산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커브스코리아는 계약의 안전을 위해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전부 체결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가맹금을 예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40,700
가입비	13,200
교육비	11,000
개점 전 서비스와 문서작성 및 공정	16,5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귀하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품목은 58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6,526				
인테리어	(주)커브스 코리아	약55,000	약 1,375	공사진행에 따름	공사 전 계약취소	약40평 실측 후 실건적 제공
Curves 운동기구	(주)커브스 코리아	24,200		교육시작부터 교육종료까지	개점전 계약취소	
클럽오픈 준비물품	(주)커브스 코리아	약10,726		구입시	개점전 계약취소	인바디, 마케팅물품 등
사무, 운용물품	자체구입 또는 본사의뢰	약6,600		구입시	개점전 계약취소	냉.난방기, TV, PC, 집기류등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당사 사업개발부 (전화:02-3463-4242)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특별한 기준 없음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19세 이상일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여성)



The power to amaze yourself.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커브스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물품의 상세 내역은 정보공개서 58쪽 별첨 3. 클립오픈준비물품 목록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8) 한편, 귀하가 당사에 가맹금을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가맹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구분	총액	계약금	잔금
금액(천원)	40,700	10,000	30,700
납부일		가맹계약일	교육시작 이전일
비고	자금 운영관련 사업개발부와 협의가능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28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회원권 유효기간 1일당×209 ^{주1)}				
로열티	(주)커브스 코리아	회원권 유효기간 1일당×146.3	익월 10일			Curves 시스템 및 마크의 사용에 대한 대가
광고비	(주)커브스 코리아	회원권 유효기간 1일당×62.7	익월 20일			광고/홍보 비용등 부담
회원관리 시스템제공등 전산사용료	(주)커브스 코리아	165,000	당월 말일			회원관리시스템 제공 비용

점포 환경개선비용	점주자율	점주부담				강제성없음 (VII-1 참조)
지연이자	(주)커브스 코리아	가맹본부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 또는 법률상 허용 최대이자율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점사업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1) 회원권의 유효기간이란 회원과 가맹점사업자 간의 커브스 운동계약이 유지된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관련 계약조문: 10조 A, B, C, D항).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를 지급하는 거래가 없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해당없음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해당없음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합니다)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내부 및 위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에 보장된 5년간의 가맹계약 갱신기간 종료 후 추가로 연장되는 가맹계약(이하 '추가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5,000,000원에 해당하는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간의 추가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없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에게 상기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잔존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존 채무를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에서 차감정산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는 가맹계약서 16조[양도:조건 및 제한] K항[가맹본부의 양도]에 따라 가맹본부 양수인에게 본 계약 및 가맹계약상 그의 모든 권리, 의무 및 특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 및 Curves International 간의 기본 라이선스 계약이 어떠한 사유로 해지되는 경우, 본 계약은 가맹본부로부터 Curves International 에게로 양도됩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커브스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상표권 등록을 갱신합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합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가맹본부는 커브스 상표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상표권 등록을 갱신합니다. 상표권의 유효기간 만료로 인해 가맹점 사업자가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경우 가맹본부는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협력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커브스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 예정인은 (주)커브스코리아에 10,000,000원(부가세별도)을 교육비 및 개점 전 서비스와 문서작성 및 공정비 목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양수예정인은 모든 신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초교육 프로그램을 완료해야 합니다. 운영권 양도에 관한 자세한 절차는 26쪽에 나와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만료, 해지 또는 갱신 불가 시 가맹본부의 매뉴얼 또는 커브스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기밀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든 본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가 허용된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며, 가맹점 사업자는 커브스 마크 또는 커브스 마크와 관련된 이익을 취하기 위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맹 계약 해지의 효과로서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의 해지, 만료 또는 갱신 불가 시,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을 이행합니다.

(1) Curves 마크 또는 가맹점시설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상호, 장치, 마크, 서비스표, 상표, 상품명, 슬로건 또는 심볼(대중을 혼란 시키거나 속일 수 있는 이의 재생, 위조 사본, 변종, 경쟁제품 또는 모조품을 포함함)의 사용을 중지한다. 가맹점사업자가 설립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매매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상호를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 그 상호가 Curves 마크와 혼동되지 않도록 한다.

(2) 커브스 운영매뉴얼 또는 기타 자신에게 대여된 운영 매뉴얼 및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이나 Curves 마크를 포함한 모든 자료나 달리 가맹본부에 의해 기밀로 지정된 모든 자료를 즉시 가맹본부에게 반환한다.

(3) Curves 시스템 및 운영 방법의 사용을 중지하고 본 계약 제20조 B항 상의 계약기간 이후 약정 사항을 준수한다.

(4) 가맹점시설 운영에 사용된 모든 기기 및 Curves 마크를 포함하는 기타 사용가능 품목을 한화금 [1,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정 시장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고, 가맹본부의 동 선택권 행사에 관계없이 Curves 설비 또는 Curves 마크를 포함하는 기타 사용가능 품목을 여하한 사업 목적을 위해 사용하거나 이를 여하한 사업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매각 또는 제공하지 않는다.

(5) 가맹본부의 요청 시, 본 계약에 의해 허가된 가맹점시설이 위치하고 운영되는 부동산 상에서 가맹점사업자가 가질 수 있는 이권이나 권리를 (가맹점사업자가 동 부동산을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맹본부에게 즉시 양도한다. 동 양도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동 동의를 얻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또는 가맹본부가 동 양도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건물과 부동산을 그 이전 모양 및 기타 Curves 프랜차이즈와 구분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즉시 간판과 건물을 제거하거나 변경한다. 가맹점사업자가 동 변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본부가 해당 건물이나 부동산에 출입하여 비구조적 변경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

(6) 가맹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사용하는 전화번호 및 전화번호 목록에 대하여 가맹점사업자가 가지는 이권을 (가능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신속히 양도한다. 가맹점사업자는 착신전환을 통해 모든 전화를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시하는 바에 따른 기타 당사자나 사업체로 신속히 전환하며 가맹본부가 동 전환 및 전화의 착신전환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문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조치를 취한다. 가맹점사업자는 본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가 동 전화번호 및 디렉터리 목록에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본 조에 따라 그 양도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확정적으로 보유함을 인정한다.

(7) 가맹점사업자의 비용으로 가맹점시설의 모든 회원가입에 대한 수표(check drafts) 일체, 과거 및 현재 회원 목록 일체 및 잠재적 회원에 대한 정보 일체를 가맹본부에 즉시 양도 및 교부한다.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시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된 과거 및 현재의 회원 목록이나 정보를 복제하지 않고, 동 자료를 가맹본부에게 교부한 후, 가맹점시설에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용된 회원 목록, 정보 및 수표의 사본 일체를 파괴한다.

(8) 가맹점시설의 모든 제3채권자와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채무 일체(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채무가 약속어음, 송장, 증서 또는 기타 서면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또한 가맹본부 및 그 계열사에 대한 채무가 모두 당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를 즉시 지급하며, 동 채무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추가 통지 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가맹점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에는 동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가맹본부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비용 및 경비(합리적 변호사 수수료 포함)가 포함되고, 그 채무가 완납될 때까지 가맹점사업자가 소유하고 채무불이행 당시 가맹점시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차량, 동산, 비품, 기기, 간판, 재고품, 집기 또는 기타 자산에 대하여 가맹본부를 권리자로 하는 담보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이러한 담보권 설정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맹본부에게 부여하는 등 위 담보권 설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어떠한 사유로든 본 계약의 해지, 만료 또는 갱신 불가 시, 가맹점사업자는 모든 고객 관련 민원을 만족스럽게 해결하고 이를 대신하여 해결하는 가맹본부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동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비용을 변상한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 1) 귀하가 커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품 및 상품의 상세내역은 별첨3. 클럽오픈준비물품과 별첨4. 상품구입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커브스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다음과 같이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해당없음		

2. 거래 강제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커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경

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 2) 당사가 커브스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관계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대가 지불	경제적 이익의 내용	금액	비고
				해당없음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커브스 물품 프로틴외 351종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계약서상 명기된 법적책임을 부담함	별첨4. 상품구입내역 참조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남성	회원권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1회 서면시정 요구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가맹계약서 6조F항 18조F항
비회원	커브스 물품 프로틴외 351종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용역가격

(단위:원, 부가세 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등록비 정사가 99,000원 → 할인가 70% ~ 40% 순차적 적용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여성전용 30분 순환운동, 체중감량의 성격을 지닌 가맹사업	커브스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m	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을 원칙으로 함)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커브스’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커브스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에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는 향후에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당사는 상기 기재사항 외, 영업지역 관련 영업방침이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98.43%	0.70%	0.44%	0.4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12%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커브스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5년입니다.

또한, 최초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상에 보장된 5년간의 가맹계약 갱신기간 종료 후 추가로 연장되는 가맹계약 (이하 '추가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5,000,000원에 해당하는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가맹본부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간의 추가계약이 종료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없을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상기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면 가맹점 사업자가 가맹본부에 부담하여야 할 로열티, 광고비 등의 외상대 및 기타 채무가 잔존할 경우에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잔존 채무를 5,000,000원의 가맹계약 이행보증금에서 차감 정산한 후 잔여금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잔여금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본부는 계약기간 만료일 최소 90일전부터 180일 전 사이에 계약의 갱신회망여부를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갱신회망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계

약기간 만료시 해지 → 가맹점사업자는 갱신회망의사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게 갱신회망여부를 명시한 서면통지 제공 → 가맹점사업자가 위 30일의 기간이내에 갱신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가맹본부에게 달리 답변하지 않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해지(가맹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제A항 참조)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조 B항 가호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위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2조 B항 나호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2조 B항 다호 ①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2조 B항 다호 ②
○ 커브스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2조 B항 다호 ③ i)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2조 B항 다호 ③ ii)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6가지로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개서 90페이지 별첨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채무불이행 및 시정권 없는 해지	18조 A항
○ 시정 기회 있는 채무불이행	18조 B항
○ 가맹점사업자에 의한 해지	18조 F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

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8조 A항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 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8조 A항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8조 A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그러나, 귀하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조건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 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가맹본부 양수도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 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사업본부 (02-3463-4242)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한화 금[10,000,000]원(부가세별도)을 개점 전 교육, 양수지원 서비스, 문서작성 및 공정비를 목적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 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다만, 상속등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가맹본부의 승인을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가맹점사업자의 양도에 대한 조건을 준수하고 동의해야 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본 계약의 만료, 어떠한 사유로 인한 해지나 갱신 불가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제로 운영을 중단 하는 날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제로 다음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가) 가맹점시설로부터 10km이내 또는 여타 커브스 프랜차이즈의 소재지로부터 10km이내의 장소에서 본 계약에 의해 라이선스가 허여되고 설립된 것과 유사한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에 참여하거나 이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행위
- 나)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기타 가맹점사업자들에 의해 고용된 자를 고용하거나 고용을 시도하거나, 또는 동 인이 퇴사하도록 달리 유인하거나 유인을 시도하는 행위.
- 다) 가맹본부나 기타 가맹점사업자들의 사업관계 또는 유리한 입지를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
- 라) 가맹본부 또는 기타 가맹점사업자들의 고객이나 거래처를 다른 곳으로 유인하거나 유인하기 위해 시도하거나, 가맹점시설의 고객이었던 자에게 거래를 권유하거나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행위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커브스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가맹본부가 달리 서면으로 승인 또는 지시하거나 관련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최소기준)	영업일수	비고
월-금 오전 10시-13시 오후 4시- 8시 토 오전 10시-13시	1년 52주(공휴일 제외)	문의: 사업본부 (02-3463-42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



The power to amaze yourself.

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 감독하지 않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커브스 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 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 ·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본 가맹계약서 32쪽 [20조. 제한적 약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 또는 당사의 임원의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이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행위나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10주	137,226
상담 절차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10주	-
	사업 설명·상담	- 가맹희망자 상담 - 가맹의향신청서 작성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입지분석 및 확정	-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자료, 수익분석표제공 - 계약서 제공		-
가 맹 계 약 진 행	가맹계약체결 및 개점 전 서비스	- 가맹계약금 납부 - 피해보상보험증서교부 - 문서작성 및 공정	D-8주	16,500
	부동산계약 및 채용공고	- 부동산 계약 - 클럽 인력 채용공고		-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
오픈 6 주 플랜	운동장비	- 운동장비 주문	D-6주	24,200
	프랜차이즈권	- 프랜차이즈권 취득		13,200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약 55,000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11,000
	사무집기	- 사무집기 및 비품 구매	D-4주	6,600
	클럽오픈준비물품	- 마케팅/판매촉진활동 및 오픈준비 물품구매		10,726
	가맹점 오픈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

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가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비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서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	○ 점포환경개선 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 (공사 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운영하는 지원제도가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해당없음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커브스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부가세 포함)

신용명 또는 내용	신용제공자	금액	신용 형태	신용제공 조건
창업자금 지원	(주)커브스코리아	최대 3천만원	신용 대출	임원 면담 후 결정
프랜차이즈 우대신용 대출	하나은행	최대 5천만원	신용 대출 담보 대출	신용등급 6등급이상

※ 구체적인 신용제공 조건은 귀하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 지원을 원하는 경우 02-3463-4242로 상담하기 바랍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해 경영상 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아래 지원내용 이외에도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사정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신규 가맹점 조기 안정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전담멘토 인력 지정 및 지원	신규 가맹점 개설 조건	신규가맹점 개설일 4주전부터 ~ 개설일로 부터 6개월까지	- 가맹점 개설전 및 개설 후 6개월까지 전담 멘토 지원을 통한 추가교육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가맹점 상권분석, 홍보·마케팅등 가맹점 운영에 대한 직접 지원			- 개설전 가맹점 지역 상권 분석에 따라 최적화된 홍보·마케팅 진행 - 신규 가맹점의 성공적 개설을 위한 필수요건 제시 및 주차별 세분화 된 가맹점 운영지원 계획 실행	
가맹점의	매출부진 가맹점의	가맹본부	가맹	- 가맹점별 매출부진 사유 사전분석	

지속적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상생Program 운영	Jump-up을 위한 다양한 교육 Program의 체계적 시행	사전 설정 기준에 의함	계약 기간	- 매출부진 사유별 체계적인 on-line, off-line 교육·마케팅 지원 병행	
	매출우위 베스트 가맹점의 성장·발전사례 및 노하우(know-how)전파	가맹본부 사전 설정 기준에 의함	가맹 계약기간	- 매출우위 베스트 가맹점의 성장·발전 사례 지속 발굴 - 우수사례 및 know-how 전파를 위한 on-line, off-line 교육 병행	
	가맹점 운영 전분야에 걸친 체계적 consulting 진행	가맹본부 사전 설정 기준에 의함	가맹 계약기간	- 가맹점 운영 및 상생 Program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전담 consulting팀 구성·운영 - 전담 consulting팀에 의한 on-line, off-line 지원 병행	

VIII.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커브스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 ·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 ※ 클럽 가맹사업자 및 정직원은 반드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클럽 오픈전까지 가맹본부에서 실시하는 이론, 실기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
교육 내용 및 방식은 상황에 따라 추가 및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커브스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최초가맹비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 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가맹점사업자는 커브스 가맹계약서 9조에 따라 가맹점 시설을 개점하기 전, 가맹본부에 판단하기에 최초 교육프로그램을 만족스럽게 수료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개점시기를 연장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문정클럽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24, 1동 201호(문정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②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12년 5개월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1~2023년)

- 가.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나.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다.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2. 직영점 및 가맹점목록
- 3. 클럽오픈준비물품
- 4. 상품구입내역
- 5.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 6. 상품판매권장가격
- 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별첨1.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2021년~2023년)

가. 2021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나. 2022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다. 2023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2. 직영점 및 가맹점 목록

1) 직영점(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2) 가맹점(2023년 12월 31일 기준)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The power to amaze yourself.

별첨3. 클럽오픈준비물품

[오픈클럽 초도물품 신청서]

()클럽 / 가맹번호 : 3 0 0 0 0

물품발송일 : 0000-00-00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4. 상품구입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별첨5.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The power to amaze yourself.

별첨6. 상품판매권장가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The power to amaze yourself.

별첨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